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개정시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도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 시행 이전('19.7.2)에 승인을 신청하는 대상사업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